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명	채인묵	소속위원회	기획경제위
질문대상자	경제정책실장		
질문제목	서울시 뉴딜일자리 관련		

<질문내용>

1. 서울시 뉴딜일자리 자격배제요건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는 2020.3.6 서울시홈페이지에 2020 민간기업 맞춤형 사업 통합공고문을 발표했음. 서울형뉴딜일자리의 배제요건중 2가지
①사업자등록소유자(일반임대사업자포함), ②개인별로 최대23개월까지 가능함.
- 부모 합산 재산이 1억원 이하이면 가점을 주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전세, 자가소유 하면 빚 유무와 상관없이 가점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임.

■ 건의사항

- 일반임대사업자(연 3천만원이하)는 배제요건에서 제외할 수 없는지? 중장년층이 조기퇴직후 일반임대사업자로서 임대소득이 발생하지만 월 100만원 이하 다수임.
- 중장년층 자녀는 대부분 대학생, 고등학생으로 지출대비 월 임대소득을 배제요건으로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개인별로 최대 23개월 폐지요청. 대부분 2년 이상의 직무경험이 있을 때 민간에서 이를 경력으로 산정하고 있어, 뉴딜일자리가 실질적인 직무교육, 경력형성을 위한 사업이라면 23개월을 초과해 근무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2. 서울시 뉴딜일자리 나이제한 완화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뉴딜일자리 은 대부분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인 자를 대상으로 모집함.
- 평균 자녀나이 10세~15세 학교취학 세대 40대 남성과 여성을 기준으로 해당 연령은 고용된 기업체 또는 조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형성함.
-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기업체 정리해고 대상 1순위 또는 채용 기피대상이 됨.
- 한편 서울시는 장년층 만 50세~67세 서울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건의사항

- 한정된 자원에서 더욱 필요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자격 제한을 두는 것은 타당하나, 연령을 이유로 지원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함.
- 현재 청년, 장년층 위주의 일자리 지원정책에서 40대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정책 부재함. 가정의 주소득자인 40대가 경제적 위기에 처하거나 재취업을 해야할 경우 뉴딜일자리 정책을 활용 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의견은?

1. 서울시 뉴딜일자리 자격배제요건 관련

- 가. 뉴딜일자리 관련 일반임대사업자(연 3천만원이하)는 배제요건에서 제외할 수 없는지?
- 나. 개인별로 최대 23개월 폐지요청. 대부분 2년 이상의 직무경험이 있을 때 민간에서 이를 경력으로 산정하고 있어, 뉴딜일자리가 실질적인 직무 교육, 경력형성을 위한 사업이라면 23개월을 초과해 근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 다. 부모 합산 재산이 1억원 이하이면 가점을 주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전세, 자가소유 하면 빚 유무와 상관없이 가점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임.

작성 자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	담당사무관	양정열
	☎2133-5461	주무관	김미라
작성일 : 2020. 12.			

가. 뉴딜일자리 관련 일반임대사업자(연 3천만원이하)는 배제요건에서 제외할 수 없는지?

□ **답변**

- 현재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뉴딜일자리사업 참여가 배제되고 있음.
- 임대소득이 미미하거나 세제 혜택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까지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내년에는 고용보험법 상 미취업으로 인정되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참여가능 하도록 요건을 완화할 예정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제6호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 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뉴딜일자리사업 참여배제 요건 완화 내용(예정)**

2020년	20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만 18세미만자 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만 18세미만자 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 신고를 하는 등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참여가능

나. 개인별로 최대 23개월 폐지요청. 대부분 2년 이상의 직무경험이 있을 때 민간에서 이를 경력으로 산정하고 있어, 뉴딜일자리가 실질적인 직무 교육, 경력형성을 위한 사업이라면 23개월을 초과해 근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 **답변**

- 참여자들이 뉴딜 근무에 안주하지 않고 가급적 빠른 기간 내 민간일자리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뉴딜사업의 취지상 개인별 참여가능 기간은 최대 23개월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뉴딜일자리사업 종합지침, 2017년부터 적용)

※ 2016년도까지는 개인별 11개월까지만 참여할 수 있었음

- 참여 가능 기간: 1인당 최대 23개월(뉴딜일자리사업 종합지침)

- 참여자는 단일 사업 또는 다수의 사업에 23개월 까지 참여가능

※ 23개월 연속근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참여가능한 상한선을 의미함.

다만, 해당 사업이 다음연도 계속사업으로 선정되어, 기존 참여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연장심사를 통과한 경우는 23개월 연속 근무도 가능.

다. 부모 합산 재산이 1억원 이하이면 가점을 주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전세, 자가소유 하면 빛 유무와 상관없이 가점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임.

□ 답변

-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표준안)상 재산상황 평가항목에 건축물, 주택, 토지 과세표준액 합산금액이 1억원 미만은 20점, 1억원 ~ 3억원은 15점, 3억원 초과 10점의 배점을 두고 있을 뿐 별도의 가점이나 감점사항은 없으며, 재산상황 평가 시 차등을 두는 이유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2. 서울시 뉴딜일자리 나이제한 완화 관련

- 현재 청년, 장년층 위주의 일자리 지원정책에서 40대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정책 부재

□ 답변

- 뉴딜일자리사업에 참여가능한 연령은 만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연령의 하한선만 정하고 있으며 개별사업의 특성에 따라 청년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만39세 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 청년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만18세 이상 미취업 서울시민이라면 연령에 제한 없이 사업참여가 가능함
 - ※ '20년 뉴딜일자리사업 중 연령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한 사업 총 285개 사업중 78개사업 2,161명 규모
 - ※ '21년 뉴딜일자리사업 중 연령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한 사업(예정) 총222개 사업 중 67개사업 1,402명 규모
- 뉴딜일자리사업은 공모의 형태로 각 신청부서에서 사업추진 상 필요에 따라 참여대상을 일반 또는 청년으로 결정하여 신청하고 있음

작	기관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성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	담당사무관	양정열
	☎2133-5461	주무관	김미라
자	작성일 : 2020. 12.		